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분	합계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95,764	171,491	137,776	330,882	374,494	13,423	358	50,462	16,877
비	805,648	129,161	102,345	189,906	328,375	9,193	-	46,668	-
시·도비	290,116	42,330	35,431	140,976	46,119	4,230	358	3,794	16,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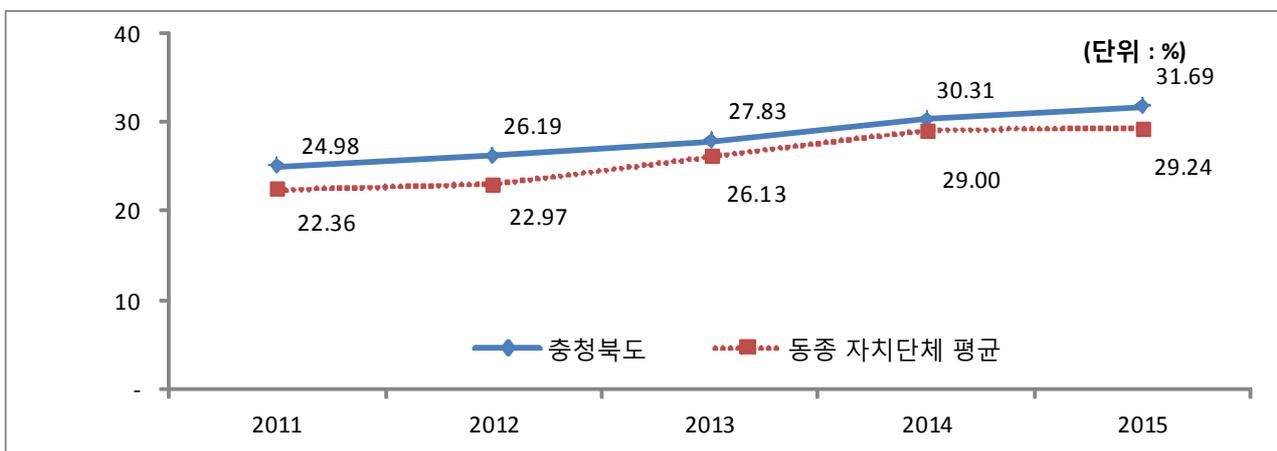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82,121	2,805,471	3,064,855	3,182,188	3,458,003
사회복지분야(B)	670,010	734,884	852,916	964,473	1,095,764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98	26.19	27.83	30.31	31.69
인구수(C)	1,562,903	1,565,628	1,572,732	1,578,933	1,583,952
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29	469	542	611	692

유사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 정부의 무상 보육확대 등의 영향으로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458,003	59,452	1.72	
(307-02)	3,458,003	32,993	0.95	
사회단체보조 (307-03)		2,817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3,749	0.1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307-10)		4,942	0.14	
사회복지보조 (307-11)		9,392	0.27	
민간자본보조 (402-01)		5,559	0.1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 민간경상보조(307-02)와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첨 6-2\]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과 [\[별첨 6-2\] 2015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을 참조하세요.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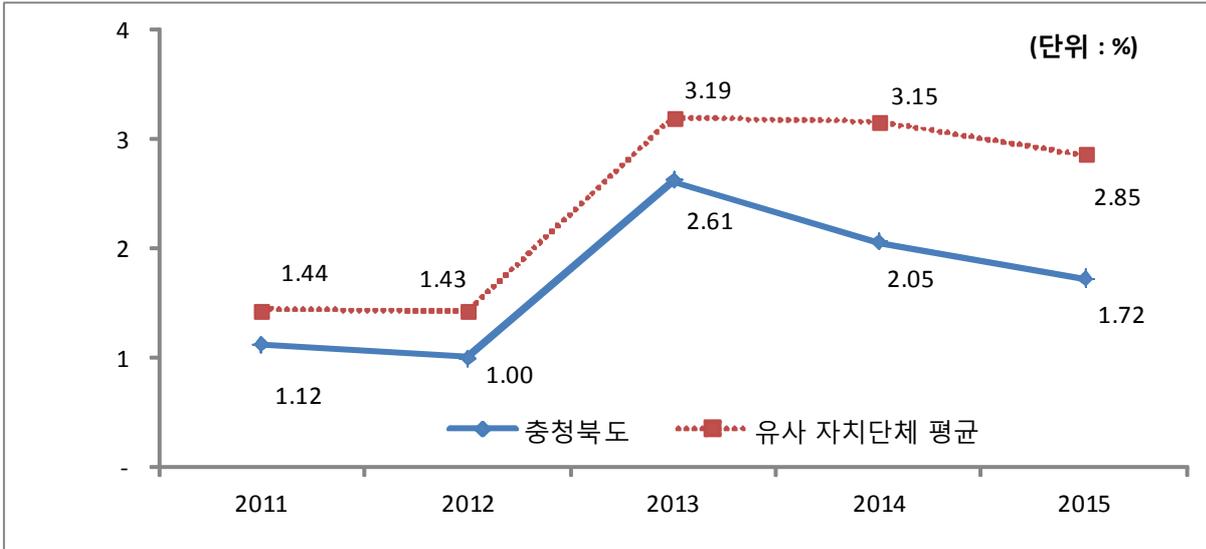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82,121	2,805,471	3,064,855	3,182,188	3,458,003
지방보조금(민간)	29,967	28,062	79,884	65,274	59,452
비 율	1.12	1.00	2.61	2.05	1.72

- ▶ 청주·충주의료원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민간자본보조(402-01) 금액이 감소하여 2015년도 지방보조금 교부금액 감소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별첨 6-3]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참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는

[별첨 6-3] 2015년도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별첨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참조									

- ▶ 중요재산 :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첨 6-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참조하세요.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 ☐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58,003	3,244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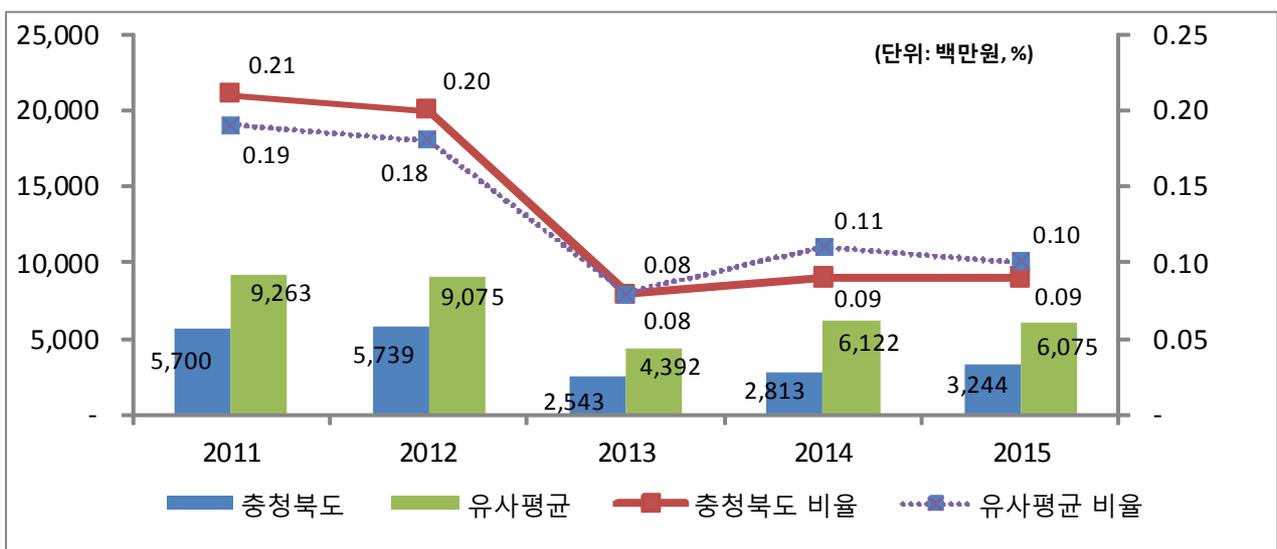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682,121	2,805,471	3,064,855	3,182,188	3,458,003
행사·축제경비	5,700	5,739	2,543	2,813	3,244
비율	0.21	0.20	0.08	0.09	0.0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 ▶ 2015년도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164백만원), 유기농산업 홍보관운영(200백만원), 직원연수(150백만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행사·축제 경비가 431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